

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(안)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 2006. 4. 18 : 사천시장 제출

나 2006. 4. 18 : 총무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 17 호)

다 2006. 4. 25 :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
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회계과장 류재석)

가 제안이유

- 2006년도에 취득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함.

나 주요내용

- 취 득 (변경분)

취 득 사 유	구분	수량	면적 (㎡)	예정가액 (천원)	담당부서	비고
생활공원내(사남 생태 공원조성사업 부지) 사유지 매입	토지	6필지	5,171	102,239	녹지공원과	

※ 예정가격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임

다 관계법령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송군호)

- 2006년도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사남면 월성리 462번지의 5필지에 대해 총 102,239천원(공시지가 기준)을 들여 사남면 초전소류지에 연접한 생태공원 조성용 부지 5,171㎡의 사유지를 취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- 검토의견으로는 초전소류지에 자생하는 연꽃과 특색 있는 수생식물을 배경으로 꽃창포, 물옥잠, 조망테크 등을 설치하게 될 생태공원 조성용지로 2006생활공원 도비 보조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006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며, 금회 사유지 매입이 완료되면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 공원으로 조성하여 휴식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여가선용과 관광자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